**‘SSBC’ 동아리 회칙**

**제 1장 총칙**

**제 1조 [동아리 명칭]**

본 회는 숭실대학교 SSBC (soongsil basketball club)이라 칭한다.

**제 2조 [목적]**

숭실대학교 구성원들이 농구를 통한 구성원들의 체력 증진 및 협동심 향상을 기본 목적으로 하며 부가적으로 친목 도모 및 외부 및 내부 대회 도전을 통한 성취감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 3조 [동아리 소재]**

본 회는 숭실대학교 내에 둔다.

**제 2장 임원진 및 집행부**

**제 1조 [임원진의 임기]**

1항: 회장은 2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서 효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하며 임기는 1학기이다.

2항: 부회장은 2학기 이상을 등록한 자로서 임기는 1학기이다.

3항: 부회장의 선출방법은 회장 선출방법과 동일하다.

4항: 회계, 서기 및 각 부 부장은 회장이 지명한다.

**제 2조 [임원진 선출 방식]**

본 회의 임원진은 동아리 구성원 과반수 이상이 참가한 총회에서 투표를 통해 결정한다.

**제 3조 [임원진]**

본 회의 임원진은 회장,부회장,총무로 구성된다.

**제 4조 [임원진 회의]**

본 회의 임원진 회의는 임원진 구성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회의를 조직할 수 있다.

**제 3장 회원**

**제 1조 [회원 자격 및 의무]**

본 회 회원의 자격은 숭실대학교에 입학하여 졸업하지 않은 학생으로 한다.

**제 2조 [회원의 가입]**

본 회의 회원 가입은 동아리 목적에 찬동하며 그 이외의 부적격 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다. 더하여 본회의 회원 가입은 집행부가 정한 규칙에 따른다.

**제 3조 [회원의 탈퇴]**

본 회의 회원의 탈퇴는 탈퇴를 희망하는 회원은 임원진에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탈퇴가 성립된다.이는 정당하거나 합당한 사유가 있을 시 가능하다.

**제 4장 회의**

**제 1조 [정기 모임]**

본 회의 정기 모임은 임원진의 의결에 따라 조직된다.

**제 2조 [총회]**

본 회의 총회는 임원진의 의결과 합당한 사유가 있을 시 조직되며 본 회의 구성원들은 총회 구성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.

**제 5장 재정**

**제 1조 [수입]**

동아리의 수입은 회비로 정하며, 이는 본 동아리의 활동비로 사용된다. 그 외의 모든 본 회의 수입(대회상금, 대회상품등)은 동아리의 독립된 자산으로 동아리의 소유이며 일체 개인의 소유를 주장할 수 없다.

**제 2조 [회비]**

본 회의 회비는 한 학기에 재학생 선수 4만원 신입생 3만 매니저 1만원으로 책정되고 이는 각 시기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.

**제 3조 [결산보고]**

회장은 총회에서 당 학기의 결산보고를 해야 한다.

**제 6장 동아리 등록**

**제 1조 [등록]**

동아리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숭실대학교 학칙 및 동아리연합회 회칙에 따른다.

**제 7장 부칙**

**제 1조 [회칙 발효]**

① 각 개정안의 개정 회칙은 다음 개정일부터 시행한다.

초판 [2022.03.31]

개정 1판 [2022.03.31]

개정 2판 (2023.03.31)

**제 2조 [회칙 개정]**

① 본 동아리의 회칙 개정은 총회에서 회원의 투표에 의해 개정될 수 있으며 출석 인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이어야 한다.